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 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내 특수판매업자에게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지 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 상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기 간 : 2021. 9. 6.(월) 0시 ~ 2021.10. 3.(일) 24시
- 내 용 :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붙임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 1부. 끝.



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9/06 서병철  
협조자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위험요인>

- ▲ 대화, 상품 설명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상대적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거리두기 및 환기가 어려운 취약한 시설(오피스텔, 지하 위치 등) 존재
- ▲ 불특정 다수, 불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경우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시설 면적 6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b>① 방역수칙 준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li> <li>-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li> </ul> </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수칙 준수</li> </ul>
	<b>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li> </ul>
<b>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li> <li>■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li> <li>**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li> <li>**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li> </ul> </li> </ul>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b>④ 마스크 착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li> </ul>
	<b>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li> <li>*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li> <li>*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li> </ul>
	<b>⑥ 손씻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li> <li>-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li> </ul>
	<b>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li> <li>■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안내</li> </ul>	
	<b>⑧ 환기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li> <li>-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li> <li>- 환기시간 게시(권고)</li> <li>*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li> </ul>	
<b>⑨ 소독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1회 이상 소독</li> <li>-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li> <li>*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li> </ul>		
<b>⑧ 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리자 지정</li> <li>■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li> </ul>		
추가수칙	<b>① 시설 내 공용 장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li> </ul>